

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

존경하는 선배·동료위원 여러분!

송도호 위원입니다.

지난 2월 2일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
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본 개정조례안은

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중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
관한 사항과 관련해 자치구가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득한
경우는 서울시 소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
한편,

그동안 위원회가 심의 또는 자문하였으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에 대한 규정이 일부 미비되어 있던 것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,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